

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	10일
등록번호		등록 연월일:		
신 고 인	상 호 또는 명 칭:			
	대 표 자 성 명:		생년월일:	
	주 소:			
		(전화번호:)		
제조시설 소재지				
저탄장 소재지				
변경 사항	현 행		변 경	
변경사유				
변경 예정 연월일				
등록증 분실사유		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		

「석탄산업법」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등록증 2.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(상호 또는 명칭 변경의 경우는 제외합니다.)	수수료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·시장·군수·구청장 확인사항	석탄가공 제조시설의 설치장소 및 저탄장부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	2,000원

처리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